

「전략산업 기술사업화 레벨업 지원사업」수혜기업 추가 모집 공고

포항의 핵심주력산업 (바이오헬스·배터리·수소+철강 고도화)의 유망 중소벤처기업 육성 촉진을 위하여 포항시와 재단법인 포항테크노파크에서 추진하는 「전략산업 기술사업화 레벨업 지원사업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, 지역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.

2024년 7월 일
재단법인 포항테크노파크 이사장

I 사업개요

- 가. 사업목적 : 포항 3+1 핵심 전략산업(바이오헬스·배터리·수소+철강 고도화)으로 주력
사업 다변화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핵심기술 발굴·육성 및 고도화
나. 지원분야 : 3+1 핵심 전략산업 (바이오헬스·배터리·수소+철강 고도화) *전후방 포함
다. 지원규모 : 기업당 최대 20백만원이내 / 9개사 내외(기업부담금 10%이상, VAT는 기업부담
라. 지원기간 : 협약일 ~ 2024. 10. 31.

II 신청자격 및 지원내용

가. 신청자격

- 포항시 內 중소벤처기업 중 기술 (제품) 고도화를 통해 신시장을 개척하고자
하는 ① 업력 3년 이상이며, ② 전담부서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보유한, ③ 포
항시 *핵심산업 분야(전후방 포함) 해당하는 기업 ※① ② ③ 모두 해당하여야 함

*포항시 핵심전략산업(3+1) “바이오헬스·배터리·수소 + 철강 고도화”

나. 지원내용

- (지원규모) 최대 20백만원이내, 1개사 내외[기업부담금 (총사업비의 10%이상)]

- (지원내용) 시제품 제작, 제품고급화, 성능인증, 디자인, 홍보 등 생산 전과정에서 필요한 프로그램을 패키지로 복수 지원 가능 (최대 3개 세부 프로그램 지원)

프로그램명		지원내용	비 고
기술지원	시제품 제작	신제품 제작 지원(설계, 제작 등)	최대 3개 프로그램 신청 가능
	특허출원	국내·외 특허출원 지원	
	기술인증	국내·외 공인 인증 지원	
사업화지원	제품 고급화	기존 제품 품질향상 및 공정 개선	
	마케팅	온·오프라인 홍보 마케팅 지원	
	전시회	국내·외 전시회 참가비 등 지원	
	브랜드개발 및 개선	제품 브랜드 이미지 개발 등 지원	
	상품기획 및 디자인	제품 및 패키지 디자인 지원	
	컨설팅	애로기술 진단, 제품 판로 개척 전략 수립 등 컨설팅 지원	

다. 지원방법 : 직접지원 (포항테크노파크 → 선정기업 직접 지급)

-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, 지원예산 범위 내 지원금 차등 지원
- 자부담은 총 사업비의 10% 이상 현금 매칭 필수(공급가액 기준)

총사업비(예시)	지원금(90%)	자부담금*(10%)	비고
22,300,000	20,000,000	2,300,000	* 자부담금 산정 시, 만의 자리에서 올림

라. 지원절차

수혜기업 모집공고	- 수혜기업 모집공고 시행 및 사업 홍보 - 지원신청서 등 공고에 정하는 신청서류 접수
수혜기업 선정평가	- 신청서류를 바탕으로 신청자격요건 등 사전 검토 - 선정평가위원회 : 적격심사 위주의 서면평가 실시 - 수혜기업(지원과제) 선정 및 TP지원금 확정
선정결과 통보 및 협약체결	- 선정평가 결과를 수혜기업에게 통보 - 협약용 수정사업계획서 작성 및 접수 - 절차 및 서식에 따라 협약 체결
지원과제 수행 및 모니터링	- 수혜기업 : 과제수행계획서에 의거한 과제 수행 - 포항TP : 지원과제에 대한 과제진도 관리(모니터링)
지원과제 결과평가	- 결과보고서(사업비 사용증빙 포함) 접수 - 결과평가위원회 : 과제수행 실적에 대한 결과평가 - 사업비 정산 및 TP지원금 지급
지원과제 사후관리	- 고용, 매출 등 조사 및 모니터링 - 기업 니즈에 따른 연계 및 후속 지원 프로그램 제공

○ (지원규모) 최대 20백만원 이내, 1개사 내외[기업부담금 (총사업비의 10%이상)]

III 신청방법 및 평가기준

가. 신청기간 : 공고일 ~ 2024. 8. 9.(금)

나. 신청방법 : 온라인접수[(www.ptp.or.kr)→알림마당→사업공고→온라인신청]

- ※ ① 회원가입 및 로그인 필수 - ② (정회원필수) 기업정보 및 신청정보입력
③ (신청서식)첨부파일 업로드 - ④ 입력내용 확인 후 신청

다. 제출서류

번호	서식명	관련서식	제출구분
1	지원신청서	서식1	필수
2	사업계획서	서식2	필수
3	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	서식3	필수
4	중복지원 금지 약약서	서식4	필수
5	개인(기업)정보 수집·이용 및 제공 동의서	서식5	필수
6	사업자등록증	-	필수
7	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(유효기간 내)	-	필수
8	최근 3년간 재무제표 (홈텍스 발급분)	-	필수
9	최근 3년간 고용인원 증빙서류 (연도말 고용보험가입자 명부)	-	필수
10	견적서 (비교견적 포함)	-	필수
11	지식재산권, 표준인증 등 증빙서류	-	해당시
12	정부, 공공기관 표창 수상실적 및 기타 정부 인증서류	-	해당시
13	기타 기술·제품 소개자료 (브로슈어, 카달로그, PPT 등)	-	해당시

□ 선정방법 : (1단계) 자격제한 여부 검토 → (2단계) 외부전문가 평가

- (1단계) 신청서류를 바탕으로 신청자격요건 등 사전 검토
- (2단계) 선정평가위원회 : 1단계 평가 통과기업에 限, 관련분야 외부전문가 5인내외로 구성된 선정평가위원회에서 지원의 필요성, 사업추진계획 및 내용,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등을 평가하여 평가결과를 기준으로 최종 선정기업 및 지원금 등 확정 ※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금 및 지원규모 조정될 수 있음

□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

평가항목	평가내용	평 가 지 표	배점
사업수행능력 (15)	신청기업의 경쟁력	○ 기업 일반 현황 ○ 지원사업에 대한 의지, 전문성 (인증, 규격, 마크, 특허 등의 보유 정도) ○ 정부과제 참여 연구실적 등 연구역량	15
기술·제품 경쟁력 (30)	기술성	○ 차별성, 비교우위 요소, 경쟁력 등	15
	시장성	○ 시장규모, 성장 추세, 시장 진입 가능성 등	15
계획의 적정성 (30)	목표의 명확성	○ 목표, 내용 및 결과(산출)물에 대한 명확성	15
	추진전략의 적정성	○ 추진방법 및 전략, 계획의 구체성 ○ 추진일정 및 사업비의 적정성	15

평가항목	평가내용	평 가 지 표	배점
지원효과성 (25)	상용화 계획의 적정성	- 최종 결과물의 활용계획 및 기대효과 - 제품(기술)의 기술적, 경제적, 사회적 성과 및 기여	15
	파급효과	- 사업수행을 통한 기업의 성장 가능성 - 신규시장창출, 고용창출, 매출액 증가, 수출증대 등	01

V 추진일정

NO	사업추진내용	추진일정(월)											
		1	2	3	4	5	6	7	8	9	10	11	12
1	수혜기업 모집공고												
2	수혜기업 선정평가												
3	선정결과 통보 및 협약체결												
4	지원과제 수행 및 모니터링												
5	지원과제 결과평가												
6	지원과제 사후관리												

※ 상기 일정은 사업추진 제반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.

VI 유의사항

○ 지원제외 대상

-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(중소기업자의 범위)에서 정한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
- 기 개발 기 지원 여부
 - 1)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경우
 - 2) 신청과제가 동일기업의 기 지원된 과제내용과 유사한 경우
 - 3) 신청기업이 기 생산 혹은 판매중인 경우
- 지원기업 및 지원기업의 대표가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 사업 참여제한 제제를 받고 있는 경우나, 의무사항(보고서 제출, 기술료·정산금·환수금 납부 등) 불이행 중인 경우
- 부도, 세무당국에 의해 국세,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/민사 집행법에 의하여 채무 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되거나,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/ 파산·회생절차·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/ 휴·폐업 중인 기업인 경우 / 직전년도 결산 기준 자본 전액잠식

- 직전년도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1,000% 이상인 기업
-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직전년도 감사의견이 “의견거절” 또는 “부적정” 인 경우
- 허위사항으로 신청하여 적발되는 경우
- 기타 본 사업에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
- 지원 대상 기업 선정
 - 선정평가전 서류적격여부 사전검토(필요시 현장방문을 실시)
 - 지원대상의 적격성, 필요성, 사업수행 여부 등을 평가하여 지원여부 결정
 - 선정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, 신청기업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. 또한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
- (진도점검) 과제수행현황 등을 확인하기 위해 협약기간 중 1회 이상 실시
- 당초 협약된 사업계획서의 사업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 변경을 신청하여 승인을 득한 후 사업을 수행하여야 함
- 협약종료 후 14일 이내 사업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함
- 협약기간 내 수행과제를 완료하고 14일 이내 결과보고서를 제출할 때 정산에 필요한 제출자료(자부담증빙)를 함께 제출해야 함
- 결과물을 제출하지 못하거나 협약 위반사항이 발생할 경우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음
- TP 지원금의 부당사용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지원금 전액을 환수할 수 있으며, 또한 향후 지원사업에 참여를 제한하는 등의 제재조치를 가할 수 있음

VII 담당자 문의처

소속	담당자	전화번호	이메일
기업지원실 지역산업육성팀	장은별 사원	054)223-2236	quf1209@ptp.or.kr